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송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222
------	------

발의년월일 : 2018. 9. 21.
 발 의 자 : 송영헌 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박우근 의원
 윤영애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장상수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효행 및 경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현재 우리사회의 핵가족·산업화에 따른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는 등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효행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교육을 위한 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
5.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효행교육 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및 경로에 관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